

2026년도 상반기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계획 공고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지원 개요

- 지원 규모 : 300억원 ※ 하반기 100억원 예정
- 지원 내용

사 업 명	지 원 용도	지 원 한도	상 환 조 건	비 고
창업지원사업 (업력: 7년 이내)	공장부지 매입, 제조기계설비 구입, 공장건물 매입·건축·임차 등	10억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시설 자금
경쟁력강화사업 (업력: 7년 초과)	생산시설 교체·증설, 공장 증·개축 및 확장	10억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시설 자금
경영안정화사업	연구개발, 원·부자재 구입, 기타 경영 소요 자금	3억원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운전 자금

※ 우대기업(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대상으로 지원 한도 10% 이내의 추가 지원

- 취급 은행 : NH농협, IBK기업, 광주,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KDB산업은행
- 대출 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2026년 1분기 : 2.12%
-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기업 : 0.5%p 인하 적용(1.62%)

2 지원 대상

□ 제조업체 또는 서비스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표준산업분류코드 제조업 10~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세무서 발급)
 - ⑦ 직전 연도의 표준재무제표 원본(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
 - 2025. 1. 1. 이후 창업업체 중 직전연도 표준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⑧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 관련 허가증
 - ⑨ 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인증서 사본
 - ⑩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 재무제표(2개년), 기타 광주경제진흥상생 일자리재단과 협의된 서류
- ※ **연간 비교 : 직전 연도와 직전 전년도**
반기 비교 : 직전 반기와 직전 전반기 또는 전년 동반기
분기 비교 : 직전 분기와 직전 전분기 또는 전년 동분기

4 지원 결정

- 통보내용 : 대출 지원 대상업체 및 지원 금액
- 통보기관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지원대상 업체, 취급 은행
- 대출 실행조건 : 취급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함
- 대출 취급기한 : 지원 확정일 ~ 2026. 12. 15.(화)

5 기타 사항

- 본 공고 이외 사항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순으로 평가하며, 지원 규모 소진 시 후순위 업체로 배정될 수 있음
- 지원규모 소진 시, 승인서를 받더라도 용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하남혁신지원센터
일자리경제실 (☎ 062-956-2647, 062-531-6332)

붙임 1**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제조업 코드(10 ~ 34)**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코드)
○ 식료품 제조업	10
○ 음료 제조업	11
○ 담배 제조업	12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3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16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 1차 금속 제조업	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 전기장비 제조업	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 가구 제조업	32
○ 기타 제품 제조업	33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

붙임 2**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의 범위**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도로화물 운송업	493
○ 해상 운송업	501
○ 항공 운송업	51
○ 화물 취급업	5294
○ 보관 및 창고업	5210
○ 물류터미널 운영업	52913
○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52993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6390
○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74212
○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기타 환경정화 및 복원업 포함)	381 (39009)
○ 폐기물 처리업	382
○ 폐수 처리업	37012
○ 컨테이너 임대업	76190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76320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서비스	72

가. 기본 제출서류

공통사항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제조업	공장 등록업체	공장등록증	
	공장 미등록업체	500㎡ 이하	건축물관리대장 (용도: 공장 또는 제조) 공장 및 제조업장 사진 4장
		500㎡ 이상	신청 불가

나. 제조업 공장등록 대체 가능 업종 증빙서류

증빙서류	해당업종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 등록증	자동차정비업
해당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허가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인쇄사, 양곡가공, 인삼제조, 사료제조, 비료생산,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계량기 제조업, 물질제조, 유해화학물질, 가축분뇨재활용, 먹는샘물, 건강기능식품, 의지보조기구, 골재채취업, 건설기계사업, 자동차폐차업, 수산물가공업

다. 서비스업 공장등록 대체 제출서류

증빙서류	해당업종
사업장 사진 4장 (상호노출 사진 포함)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사업관련 등록증, 인·허가증 또는 관련 계약서 및 매출증빙서류	